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2579호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3일
발 의 자 : 최재란 의원
찬 성 자 : 임정옥, 박종호, 신상균, 정순희, 임준희, 이수옥 의원 (6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 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마.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라. 기　　타

1) 조 례 안 : 별첨

2) 조례안 예고 : 2021. 3. 5. ~ 2021. 3.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장애위험군 영유아” 란 발달검사에 따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3.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이란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장애발생을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발달검사 및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원 사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유아 전수조사 및 발달검사
2.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 등 보호자에 대한 심리 지원 서비스 제공
4.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